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9. 28.(화)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해사산업기술과	담당 자	• 과장 최종욱, 사무관 박형영, 주무관 김영권 • ☎ (044)200-5831, 5833	
보 도 일 시	2021년 9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선박결함 신고, 온라인으로 더욱 간편하게!

-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 온라인 선박결함 신고 시스템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기존에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만 할 수 있었던 선박결함 신고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 제7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이나 구명정과 같은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으로, 관련 결함을 방지할 경우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조속한 수리나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

이 규정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신고를 하려면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불편함과 동시에, 신고 시 신변 노출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선박 종사자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이 동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선박결함 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박결함 신고 절차를 개선하였다. 먼저,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누구든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 선박 결함신고 접수처를 마련하였다.

< 온라인 선박결함 신고접수처 >

구분	접수처	접수경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www.portmis.go.kr	전체메뉴 - 선박결함신고
해양수산부	www.mof.go.kr	전체메뉴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선박결함신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www.portbusan.go.kr	전체메뉴 - 민원바다 - 선박결함신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incheon.mof.go.kr	
여수지방해양수산청	yeosu.mof.go.kr	
마산지방해양수산청	masan.mof.go.kr	
울산지방해양수산청	ulsan.mof.go.kr	
동해지방해양수산청	donghae.mof.go.kr	
군산지방해양수산청	gunsan.mof.go.kr	
목포지방해양수산청	mokpo.mof.go.kr	
포항지방해양수산청	pohang.mof.go.kr	
평택지방해양수산청	pyeongtaek.mof.go.kr	
대산지방해양수산청	daesan.mof.go.kr	

아울러,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신고된 내용은 승인을 받은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변 노출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경우 「선박안전법」 제7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육지에서 떨어져 운항하는 선박의 특성상 해운관청, 검사기관 등이 선박에서 발생한 결함을 신속하게 모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방문접수 등의 불편함이나 신분 노출의 우려가 없는 온라인 신고 접수처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 결함신고 제도가 더욱 활발히 운영되어 선박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참고 1

온라인 선박결함 신고접수처

The screenshot shows the '선박결함신고' (Ship Defect Reporting) page on the PORT-MIS system. The page is titled '선박결함신고 근거 법령' (Legal Basis for Ship Defect Reporting) and '선박결함신고 처리절차 프로세스' (Ship Defect Reporting Process).

선박결함신고 근거 법령

※ 「선박안전법 제74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강행규정)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비공개 해야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안전법 제74조(신고에 따른 확인 등)

[제1항]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결함의 내용이 중대하여 해당 선박을 항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항]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선박결함신고 처리절차 프로세스

결함신고 (인원인) → 신고접수 (본부, 지방청) → 사실관계 확인 (본부, 지방청) → 시정조치 또는 출항정지 (본부, 지방청)

※ 민원처리를 위해 구분 선택 및 신고자 휴대전화번호 인증이 필요합니다.

*구분 선박결함신고 선박결함신고 목록조회

*신고자 휴대전화번호 ex) 01012345678 인증번호발송 인증번호 인증

참고 2

선박결함 사례 및 사진(예시)

▼ 구멍정이 진수장치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



▼ 선체내부와 연결되는 수밀구조물에 파공

